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81
----------	-------

발의연월일 : 2025. 7. 23.

발 의 자 : 서영석 · 이해식 · 박홍배
윤준병 · 박민규 · 허종식
소병훈 · 이용우 · 윤건영
문진석 의원(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생 문제와 인구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 「아동수당법」 등 다수의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적으로 결혼지원금, 출산지원금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저출생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위기가 심화되면서 그간 마련해 온 제도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출산지원대출을 실시하도록 하고 채무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국가가 대출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상환하도록 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 금융기관이 출산지원대출을 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나. 출산지원대출의 대상을 자녀를 출산할 예정이거나 출생일을 포함하여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녀를 출산한 부부 등으로 함(안 제4조).
- 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출산지원대출 실행 시 대출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설명의무 위반 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조, 제14조 및 제16조).
- 라. 출산지원대출을 받은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자녀 출산 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상환하도록 함(안 제8조).
- 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 바. 출산지원기금을 설립하여 출산지원대출 원금 상환 지원, 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이 원금 상환 지원 또는 이자 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받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출산지원대출 및 대출원금의 상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지원대출”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약에 따라 제공하는 대출을 말한다.
2. “채무자”란 출산지원대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출산지원대출의 운용 협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출산지원대출을 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출산지원대출의 대상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대출액의 상환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출산지원대출의 금리에 관한 사항
4. 출산지원대출의 신청 및 상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산지원대출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사항

제4조(출산지원대출 대상) ① 출산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자녀를 출산할 예정이거나 출생일을 포함하여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녀를 출산한 부부(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 및 예비부부를 포함한다)
2. 자녀를 출산할 예정이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생일을 포함하여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녀를 출산하였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자녀를 출산할 예정이거나 출생일을 포함하여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녀를 출산한 미혼모
4. 출생일을 포함하여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부

② 예비부부, 미혼모 및 미혼부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대출액의 상한) 대출액의 상한은 출산지원대출을 받으려는 사람 1인당 1억 5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출산지원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대출액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대출 금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출산지원대출의 금리를 결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금리를 결정하는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과 채원 조달 금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리는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사업연도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설명 의무) 금융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의 성격과 조건, 대출원리금의 상환액 산정 및 상환방법 등 대출 내용,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등을 출산지원대출을 신청한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8조(대출원금 상환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출원금의 상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출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무자 대신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1. 첫째 자녀: 제3항에 따른 신청 당시 남아있는 대출원금의 100분의 30
2. 둘째 자녀: 제3항에 따른 신청 당시 남아있는 대출원금의 100분의 50
3. 셋째 자녀: 제3항에 따른 신청 당시 남아있는 대출원금 전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출원금을 대신 상환하지 아니한다.

③ 대출원금 상환 지원의 구체적 기준, 대출원금 상환 지원 신청의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이자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하는 출산지원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구소득분위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등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자 지원을 받으려는 채무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자 지원의 구체적 기준, 신청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출산지원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산지원대출의 원금 상환 지원, 이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5.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11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제8조에 따른 대출원금 상환 지원
2. 제9조에 따른 이자 지원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의 상환
4.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제13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출산지원대출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 또는 그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에 대하여 해당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은행법」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제15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원금 상환 지원 또는 이자 지원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원금 상환 지원 또는 이자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과태료) ① 제7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대출지원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출생일을 포함하여 출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녀를 출산한 부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